



제418회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고인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 시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03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4. 8. 9.
3. 회 부 일: 2024. 8. 12.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면,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약 1,000억원의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 그룹 회장이 체불된 임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체불 임금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보석 여부의 결정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앞서 검사 뿐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임(안 제97조의2 및 제99조제1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을 취소할 경우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여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하거나 구속취소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및 제9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7조의2(보석, 구속의 취소와 피해자 등의 의견) 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보석 또는 구속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u> <u>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제1항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 <u>③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2항과 같다.</u>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

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제출한 사건에 관련된 의견 ② (현행과 같음)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93조에서 구속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에서 보석¹⁾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06조의6 및 제209조는 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에도 준용하였고, 제214조의 2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를 규정하였음.²⁾

구속의 취소 또는 보석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 또는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제259조의2³⁾는 검사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1)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2)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참고

3)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여야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제95조제6호4)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보석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석 여부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제97조5)는 구속의 취소 또는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의 의견만 묻도록 할 뿐, 피해자가 동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음. 이에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보장 및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구속·보석 여부에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⁶⁾

4)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소병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의 한계와 강화방안”,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2015, 238p 이하
 도중진·박광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위강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참여 실질화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81p 등

개정안은 ‘피고인’의 구속취소 또는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그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다음의 측면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첫째, ‘피의자’의 체포·구속 취소 또는 보석에 관한 결정 시에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현행법은 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에도 준용하였고, 제21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피의자의 구속취소 또는 보석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변보호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보석 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안 제97조의2를 준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설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피해자의 의견청취 의무화보다는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안 제97조의2는 피해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피

해자가 사건에 대한 정신적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의견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재판장이 의견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가 의견제출할 경우 청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입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의견청취’의 방법만 인정할 것인지, 서면제출 등의 방법도 허용할 것인지 등 의견제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여야 할 것임.

셋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의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보석 또는 구속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재판지연 및 절차 하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제259조의2⁷⁾ 및 피고인의 금전공탁 시 피해자 등의 의견청취 의무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 1. 17. 시행 예정) 제294조의5⁸⁾는 통지 또는 의견청취의

7)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8) 법률 제20460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상이 되는 피해자 등의 범위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

[참고자료] 구속의 취소 및 보석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①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